

【 9 】 양주시 주민 투표 조례 안

제출연월일 : 2004. 6.

제출자 : 양주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함(안 제3조)
- 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정함(안 제5조)
- 라.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투표청구 주민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0 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주도록 함(안 제11조)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중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둘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주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양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의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

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제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장(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양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양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 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읍·면·동(○책증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구하				
※ 첨부서류 : 증빙서류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양주시 주민 투표조례 제정안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함(안 제3조)
- 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정함(안 제5조)
- 라.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투표청구 주민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주도록 함(안 제11조)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중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민투표법 전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주민투표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주민투표경비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없었음

- 1차 : 2004. 5. 22 ~ 6. 10
- 2차 : 2004. 6. 10 ~ 6. 19(수정예고)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주민투표표준조례안

주 민 투 표 법

[제정 2004.1.29 법률 제0712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

-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③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제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

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 ②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 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

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관계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주민투표경비) ①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주민 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부담한다.

1. 주민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5장 별칙

제28조 (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온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제29조 (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 (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부칙 <제7124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붙임1>

주민투표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나 외국인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4조(주민 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되, 상기 각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차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납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 기회보장에 적절한 기간

※ 시도는 180일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 · 도의 경우에는 시 · 군 · 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 청구주민수가 조례개폐청구 주민수보다 많은 점과 투표기획의 보장 측면을 감안, 보정기간을 조례개폐청구보다 다소 길게 설정할 필요

※ 시도는 15일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 · 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급 이상 공무원
2. ○○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의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 역할부여)

※ 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 및 생활스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제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주민투표 조례제정요령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자			
서명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 책 중 ○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구인 서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업무연락

수 신 : 시군 주민투표 담당부서

2004. 6. 3

제 목 : 주민투표 표준조례안 수정요청

1. 지난 '04. 4.16 시달한 주민투표 표준조례안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통보하니 조례제정시 참고하기 바라며

2. 주민투표 담당자 현황을 다음서식에 의거 6.5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시군 업무연락 게시판으로 제출)

담당부서		계장		실무자		비고
과	담당	성명	전화번호	직급	성명	

끌.

덧 볼 임 : 주민투표 표준조례안 수정내용 1부. 끌.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황영성
 (담당자 : 황영성 ☎ 4082)

주민투표 표준조례안 수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

現 行	修 正 內 容
<p>제2조(도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p>제2조(도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u>각종 정보와 자료를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u></p> <p>제4조(주민투표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광활 구역안의 시군간 대립되는 사항 2. 시(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p>* 기초자치단체</p> <p>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상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시·군·자치구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 6.는 상동

現 行	修 正 內 容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u>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u> 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u>또는</u>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0조제3항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0조제4항(변경), 제26조 1항(추가)
별지서식 제4호(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수임자의 성명란 “(서명 또는 날인)” 을 삭제 ※ 위임신고증에는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불필요

“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투표조례(안) 관련 수정사항 통보(긴급)

1. 행자부 업무연락(22004.6.15)호와 관련함

2. 주민투표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중 긴급히 수정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당초안	수정안	사유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③생략 ④생략 1. 생략 2. 00시 지방의회의 의장 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4생략 ⑤~⑩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③동일 ④동일 1. 동일 2. 00시 지방의회가 추천 하는 지방의회 의원 3.4동일 ⑤~⑩동일	1996년 대법원 판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종개정 조례안제6조무효확인】 -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판여 할 수 없으며, 조례로서 이를 허용 할 수 없음

끝.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18호
------	-------------

제안년월일 : 2004년 9월 일

제안자 : 이항원 의원 외 1인

1. 수정이유

- 주민투표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과 주민투표 청구의 날짜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주민 투표 청구주민의 수를 조정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소수의 의원만이 위촉되어 있어 의원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저촉사항도 다수결에 의해 가결될 경우 의원의 입지를 해손 할 우려가 있어 의원 위촉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당해 외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 한해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한 애매하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 주민투표 청구의 날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청구주민의 수를 상향 조정함(안 제5조)
-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위원으로 의원을 위촉하는 사항을 삭제함 (안 제12조)
- 조례안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이익이 없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함 (부칙안)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주민투표의 대상이 당해 외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 제4조중 제3호, 제4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5조중 “11분의 1”을 “5분의 1”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부칙안 중 “2004년 7월 30일”을 “공포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지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단서 신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할에 관한 사항 2.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u>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u>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p>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p> <p>.....</p> <p>..... 다만, 주민투표의 대상이 담해 외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삭제> <삭제> 3. (원안과 같음) <삭제>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부 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u>11분의 1</u>로 한다.</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주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u>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u>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2004년 7월 30일</u>로부터 시행한다.</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5분의 1로 한다.</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삭제>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일</u>로부터 시행한다.</p>
---	--